

2015년도

문화재위원회(근대문화재분과) 제9차 회의록

- 일 시 : 2015. 12. 18.(금), 14:00
- 장 소 :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
- 출석위원 : 윤인석(위원장), 강규형, 신동원, 안창모,
오용섭, 채금석, 한태식
-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: 이하 자료와 같음

문 화 재 위 원 회

목 차

【심의사항】

- | | | |
|---|---|--|
| 1 | 사적 제284호 「구 서울역사」 주변 현상변경
(서울역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보행로 조성) | |
| 2 | 사적 제157호 「환구단」 주변 현상변경
(주변 경관개선 및 백화점 증축) | |

심 의 사 항

1. 사적 제284호 「구 서울역사」 주변 현상변경

가. 제안사항

-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284호 「구 서울역사」의 현상변경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구 서울역사」 주변 고가도로의 철거 및 보수보강, 보행로 조성 등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 건으로, '15년도 제8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어 이를 재심의하고자 함
(※ 보류사유 :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서울특별시
- (2) 대상문화재명 : 구 서울역사(사적 제284호, '81.09.25 지정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-28
- (3) 신청내용
 - 대상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-28 주변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,2구역)
 - ※ '1구역' 현상변경 허용기준 : 심의구역
 - ※ '2구역' 현상변경 허용기준 : 관련 법규 준용
 - 신청내용 : 구 서울역사 주변 고가도로 보수보강 및 보행길 조성
 - 고가도로 보수보강, 엘리베이터 설치, 고가도로 상부 식재, 난간설치 등
- (4) 신청인 의견 (안전, 경관 등과 관련한 조치 계획)
 - 안전문제
 - (문화재 안전) 역사 주변 고가에 이중비계 설치, 서울역사에 방진포 설치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
 - (고가 안전) 손상 심한 바닥판은 철거하여 안전성 확보된 PC 바닥판으로 교체 설치, 기존 교각은 내력 확보 위해 손상된 콘크리트 면을 깎아내고 앵커 및 와이어메쉬 설치한 후 몰탈 타설하여 원래 규격대로 보수보강 함
 - * 이와 같이 보수보강할 경우 보행로로서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우리청이 추천한 건축구조 전문가에게 확인 받음
 - 경관 문제
 - (고가 경관) 문화재 심의구역 중 기존 난간을 보존하는 1개 경간(30m) 외에는 모두 난간을 제거하고 강화유리(높이 1.4m)를 설치하여 경관 개선함

- (접근로 경관) 광장 앞 시설물 설치를 배제하고, 지상과 고가 사이 연결 구조물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고 교각에 가려지게 하여 경관 확보함
- 역사성 보존
 - (고가 부분) 상태가 양호한 경간 한 곳의 난간을 보존하고, 바닥판 일부를 보존하는 등 고가의 역사성 보존 방안 마련함
 - (주변 연계) 만리동 공원 내 철거 바닥판 활용한 조형물 설치('16년도 서울시 12억 예산 확보) 등 주변과 연계한 역사성 보존 방안 마련함
- 시위 및 투신 대책
 - (시위 대책) 고가 상부 시위는 근본적 차단하는 관련 조례 제정 검토
 - (투신 등 대책) 기본구간은 1.4m, 철도구간은 3.0m 높이의 강화유리 난간 설치로 투신, 투척 등 방지 대책을 마련(관련 규정은 최소높이 1.2m)하고, 또한 CCTV설치 및 관리요원 상시 배치 등의 안전대책 강구

라. 검토의견

〈관계전문가 현지 조사('15.12.3) / 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〉

- 서울역 고가의 보행도로화로 예상되는 서울역 주변 문화재 경관 영향과 산업유산으로서의 고가도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충분히 확인했으며, 고가도로로 인해 예상되는 안전과 불법 시위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이슈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

마. 의결사항

- 조건부가결
 - 보행길 조성 등으로 사업 명칭을 사업 성격에 맞게 사용
 - 사업 추진과 시위 발생 등에 따른 구 서울역사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함
- 출석 7명, 조건부가결 4명, 기권 3명

2. 사적 제157호 「환구단」 주변 현상변경

가. 제안사항

-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57호 「환구단」 주변의 현상변경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제안사유

- 「환구단」 주변 경관개선 및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건으로, '15년도 제8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되어 이를 재심의하고자 함
(※ 보류사유 :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 후 재검토함 / 건물 증축부 층수 조정이 필요함)

다. 주요내용

- (1) 신청인 : (주)호텔롯데 외 1인
- (2) 대상문화재명 : 환구단(사적 제157호, '67.07.15 지정)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87-14번지
- (3) 신청내용
 - 대상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1번지(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)
※ '2구역' 현상변경 허용기준 : 심의구역
 - 신청내용 : 환구단 주변 경관개선 및 정비 / 기존 건축물 증축
 - 주변 정비 : 인공폭포, 접근로, 완충공간 등 정비, 탐방진입동선 정비 등
 - 건축물 증축 : 지상 9층(높이 31.8m), 건축면적 3,282.22㎡
- (4) 신청인 의견
 - 그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(건물 층수 조정) 및 문화재위원의 현지 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증축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였음

라. 검토의견

- <관계전문가 현지 조사('15.12.3) / 문화재위원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, ○○○>
- 현장조사 결과 (증축 건축물의) 높이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, 주변의 주진입부에서 환구단에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섬세한 계획이 필요함
 - 한편, 폭포 철거 후 원지형을 회복하고 전사청을 복원하는 문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실천의 진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

마. 의결사항

- 원안가결

- * 환구단 종합정비계획에서 롯데백화점이 이행하기로 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확인

- 출석 7명, 원안가결 6명, 조건부가결 1명